

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12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중 샴위장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자진납부함을 설치하여 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징수규정이 일부 불합리하여 이용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하여 입장객 편의를 도모코자 함

2. 주요골자

- 샴위장 시설사용료 조항 삭제(안 제6조제1항 별표2)
- 샴위장 시설사용 1회시
 - 어 른 : 500원
 - 학 생 : 300원

3. 의안전문 : 따로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5. 관계법령 : 따로 붙임

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1항 별표2 시설사용요금표 중 “샤워장”란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□ 조례명 :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현 행					개 정 안				
“별표2” 시설사용요금표 (단위 : 원)					“별표2” 시설사용요금표 (단위 : 원)				
시설명	구 분	사용시간	요 금	비 고	시설명	구 분	사용시간	요 금	비 고
숲속의집	· 4인용 · 5~8인용	1동 1일	30,000 40,000		숲속의집	(현행과 같음)			
캠프화이어장		1회사용	20,000		캠프화이어장		(“)		
오토캠핑장		개소 1일	4,000		야영장		(“)		
야영장		개소 1일	2,000		야영장		(“)		
평 상	· 소 형 (2평미만)	개소 1일	1,000		평 상		(“)		
	· 대 형 (2평이상)	개소 1일	2,000				(“)		
사계절 썰매장	· 어린이		3,000		사계절 썰매장		(“)		
	· 청소년		4,000				(“)		
	· 군인 · 일반		5,000				(“)		
단체숙소		1동 1일	100,000		단체숙소		(“)		
샤워장	· 어른 · 학생	1회사용	500 300	※징수방법은 자진납부함을 설치하여 납 부	(삭 제)				

(별표 2)

시설사용요금표

(단위 : 원)

시설명	구분	사용기간	요금	비고
숲속의 집	· 4인용	1동/1일	30,000	
	· 5~8인용		40,000	
캠핑화이어장		1회사용	20,000	앰프시설 포함
오토캠핑장		개소/1일	4,000	주차 및 야영 7~8인용텐트 1조
야영장		개소/1일	2,000	야영7~8인용 텐트1조
평상	· 소형 (2평미만)	개소/1일	1,000	
	· 대형 (2평이상)	개소/1일	2,000	
사계절썰매장	· 어린이		3,000	썰매대여 포함
	· 청소년·군인		4,000	“
	· 일반		5,000	“
단체 숙소		1동/1일	100,000	

관계법령발췌

산 립 법

제33조(휴양림의 입장료등) ①휴양림의 관리·운영자는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.<개정96. 8.8>[전문개정 90. 1. 13]

산림법시행규칙

제31조(휴양림의 입장료등의 징수기준)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의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는 해당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·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.

② 생략

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외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,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에는 휴양림의 조성자가 각각 정하되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에는 당해 휴양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개정 95. 8. 30, 98. 2. 13> [전문개정 90. 7. 14]